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정직·직위해제 처분자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, 동구, 중구, 북구

내 용

울산광역시, 동구, 중구, 북구에서는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및 휴직 복직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 따라 복직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를 재산정해 연가를 허가하거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.

「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9조, 제20조 및 각 자치구 복무조례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각 자치구 복무조례에 따르면 결근일수·정직일수·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.

[그림] 휴직자 연가일수 산정방법

$$\text{○ 휴직자 연가일수} = \frac{\text{(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복무조례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정직일수, 직위해제 일수를 당해 연도 연가일수에서 제외했어야 하지만,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자 5명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 시 해당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연가일수를 산정함으로써 [붙임1]과 같이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합한 총 연가일수가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되었다.

또한 휴직 복직자 22명에 대해서도 복직 후 해당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만큼 월할 계산해 연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휴직 복직자 연가일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[붙임2]와 같이 사용한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를 합한 총 연가일수가 적정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되었다.

조치할 사항 **울산광역시장, 동구청장, 중구청장, 북구청장은**

[시정] 정직·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연가보상비 지급액 3명에 대한 1,615,250원과 정직·직위해제 처분 후 연가를 사용한 2명에 대한 1.5일에 상응하는 금액 및 휴직 복직 후 연가를 사용한 22명에 대한 65일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

정직·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자 연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명세

(단위 : 일)

연번	소속	성명	초과(a+b-c) 연가일수	사용(a) 연가일수	보상(b) 연가일수	적정(c) 연가일수	환수금	비고
1	울산시청	○○○	17	6	11	0	738,130원 + 6일분 급여	
2	울산시청	○○○	5	0	5	0	406,420원	
3	동구청	○○○	8	0	8	0	470,700원	
4	중구청	○○○	1	1	0	0	1일분 급여	
5	북구청	○○○	0.5	0.5	0	0	0.5일	
6	남구청	○○○	20	0	20	0	1,803,360원	'18.1.30 환수조치

[붙임2]

휴직 복직자 연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명세

(단위 : 일)

연번	소속	성명	초과 (a+b-c) 연가일수	사용(a) 연가일수	보상(b) 연가일수	적정(c) 연가일수	비고
1	울산시청	○○○	1	6	16	21	
2		○○○	1	11	11	21	
3		○○○	1	6	16	21	
4		○○○	1	6	13	18	
5		○○○	6	10	12	16	
6		○○○	3	6	11	14	
7		○○○	3	17	4	18	
8		○○○	3	6	8	11	
9		○○○	2	12	5	15	
10		○○○	6	14	5	13	
11		○○○	2	7	10	15	
12		○○○	1	8	14	21	
13		○○○	1	9	13	21	
14		○○○	1	11	11	21	
15		○○○	3	5	16	18	
16		○○○	4	10	10	16	
17		○○○	3	8	9	14	
18		○○○	6	13	5	12	
19		○○○	3	7	7	11	
20		○○○	3	6	8	11	
21		○○○	10	12	9	11	
22		○○○	1	2	10	11	